#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황정아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3900

발의연월일: 2024. 9. 11.

발 의 자:황정아·조인철·이기헌

민병덕 • 박정현 • 박용갑

노종면 • 황명선 • 김남근

임광현 · 강득구 · 주철현

조계원 의원(13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5년 단위로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, 기본계획의 충실한 이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동으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 립·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이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취업·재취업 지원 사업 등 여성과학기술인을 육성·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.

그런데 여성과학기술인에 대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의 우수사례를 발굴·확산시킬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 및 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의 우수사례에 대한 포 상 및 세미나 개최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 13조의3 신설).

#### 법률 제 호

##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13조의3(우수사례의 발굴·확산)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여성 과학기술인의 육성 및 지원을 촉진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 기관 등의 우수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확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  -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  - 1.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우수사례 발굴·포상 및 홍보
  - 2.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우수사례 확산 포럼 및 세미나 개최
  - 3. 그 밖에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지원
  - ③ 국가는 우수사례 발굴에 따라 결과가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상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.

④ 제2항에 따른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&lt;신 설&gt;</u>	전   전   전   전   전   전   전   전   전   전

재정상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.
④ 제2항에 따른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